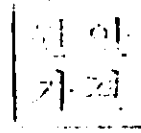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352 호
의 결	1996. 5. 28.
년 월 일	(제 44 회)

의결사항

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최정훈의원 외 5인
제출년월일	1996. 5. 1.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5. /

발 의 자 : 최정훈 의원 외 5인

1. 제 안 이 유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고성군조례 제1465호('98. 2. 18)로 개정되어 일부 과의 폐지와 명칭 변경등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가 일치되도록 관계 규정을 보완코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○ 총무위원회 소관중 "민방위과"를 "민방위재난관리과"로 명칭을 변경함.

(안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산업·건설위원회 소관중 "사회진흥과"를 폐지하고, "환경보호과"를 "환경과"로, "지역경제과"를 "경제통상과"로, "도시과"를 "지역개발과"로 명칭을 변경함.

(안 제3조제2항제2호)

3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중 "민방위과"를 "민방위재난관리과"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"사회진흥과"를 삭제하고, "환경보호과"를 "환경과"로 하며, "지역경제과"를 "경제통상과"로, "도시과"를 "지역개발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~② (생략) 1. 총무위원회 기획실, 문화공보실, 내무과, 재무과 지적과, 사회복지과, <u>민방위과</u> , 보건 소,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소 관에 속하는 사항 2. 산업·건설위원회 <u>사회진흥과</u> , <u>환경보호과</u> , 산업과, 축 산과, <u>지역경제과</u> , 산림과, 수산과, 건설과, <u>도시과</u> , 농촌지도소, 위생환 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. 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총무위원회 기획실, 문화공보실, 내무과, 재무과 지적과, 사회복지과, <u>민방위재난관리</u> <u>과</u> , 보건소,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 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. 산업·건설위원회 <u>환경과</u> , 산업과, 축산과, <u>경제통상과</u> 산림과, 수산과, <u>건설과</u> , <u>지역개발과</u> 농촌지도소,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. (현행과 같음)